



사업장 안전 지키면 산재보험료 인하

안전을 확보할 경우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앞으로 사업장들은 실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산재 예방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요율을 최대 22.5%까지 할인해 주는 '산재예방요율제'를 도입·실시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8월 7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자수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50인 이상 사업장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전체의 82.4%를 차지하고 있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3.92배가 높은 상황이다.

이 제도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제조업부터 실시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단계적으로 다른 업종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재보험요율을 할인받으려면 위험성 평가 및 사업주 안전교육 등 일정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이때 사업장에서 요청할 경우 안전보건공단의 컨설팅도 실시된다. 향후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재정·기술지원)과도 연계 운영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이재필 장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손실이 크다는 점을 알면서도 소규모 사업장들은 재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아 산재예방 활동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라며 "산재예방활동을 열심히 하면 산재보험요율 할인은 물론 기술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므로, 소규모 사업장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예방활동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제도는 영세소규모 사업주의 참여를 높인다는 취지로, 할증제 없이 할인제로만 운영된다. 하지만 부정확한 방법으로 예방활동을 인정받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예방요율 적용이 즉시 취소된다.

건설업 사망재해 과징금 2배 상향

건설현장의 각종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부과 금액이 상향 조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과징금 상한액을 높인 건설산업기본법이 6월 1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징금을 조정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개정안은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대해 기존보다 과징금 액수를 2배 높였다. 이를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10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5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1억 원이 처분된다. 6명 이상 9명 이하 사망한 경우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2명 이상 5명 이하 사망한 경우에는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각각 과징금이 상향됐다(이하 1차 위반 기준).

그 외 안전점검을 하지 않는 경우,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을 한 경우 등도 기존보다 과징금이 2배로 높아졌다.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한 건설업자가 발주자에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는 기존의 4,000만 원보다 2,000만 원 증가된 6,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에너지시설 안전 개선대책 발표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7월 14일 충남 보령시 주교면 한국중부발전(주)보령화력본부에서 '에너지기업 CEO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에너지시설 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연이어 발생했던 일련의 에너지시설 안전 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우선, 이 대책은 에너지공기업 조직 내에 '안전관리 최고 책임자(CRO)'를 별도로 임명하고, '안전관리 위원회'를 신설 토록 하는 등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객관성과 독립성을 위해 내부임원뿐만 아니라 교수, 외부전문 기관, NGO 등 10인 이상의 상설기구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핵심 및 취약설비 점검, 작업현장 관행 및 안전 관련규정 개선, 사고발생 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 등 기업 내적으로 안전관련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에너지위원회 산하에 '에너지안전전문 위원회'를 조직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외부통제 또한 강화키로 했다.

이 전문위원회는 주요 기업들의 안전관리위원회 활동 점검, 안전관련 법 제도 개선사항 도출, 기업별 안전관련 내부규정 검토 등을 관할한다. 아울러 기관장이 지식경제부와 경영계약을 체결할 경우 안전관리 활동을 별도로 작성케하고,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성과중심의 경영에 따라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안전경영체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밖에 정비이력, 고장사례, 복구방법 등을 각 기관별로 DB화하고, 기관별 DB를 연계한 '에너지안전 DB'를 구축해 관련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들의 활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력·원전·가스·석유 등 에너지별 집중관리 대책도 마련된다. 에너지공기업들은 이날 발표된 대책들을 바탕으로 자체 안전관리 종합개선대책을 10월까지 수립하고, 연말 에너지안전 보고대회를 통해 기관별 추진계획 및 이행실적 등을 발표해야 한다.

이 같은 대책이 발표된 자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에너지는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의 생명선과 같다”고 전제하며 “에너지 시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각 기업들이 경영효율 및 성과관리 외에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술인에게도 산재보험 혜택 부여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업재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예술인들이 앞으로 산업재해 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17일 입법예고하고, 11월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보통 예술인들은 특정 기관이나 업체에 고용되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 계약 등을 통해 활동하면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예술인들도 비교적 많은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계약 등을 체결하는 예술인도 본인이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업무상 재해 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예술분야를 잘 아는 비영리법인 등을 보험사무대행 기관으로 지정해 산재보험 가입신청 등 사무를 대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산재보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행정절차가 복잡해 가입이 어려울 것을 고려한 조치다.

보험료는 예술인의 기준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기준보수액 및 적용할 보험료율, 보험 사무대행 지원 기준 등은 10월께 세부검토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고용부 이채필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도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처음 열린 것이라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문화부와 협력해 예술인도 작업 중에 다치면 보상받고 재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연극, 무용, 뮤지컬, 무술연기자 등과 방송촬영, 조명, 음향 등의 기술스태프들이 다수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철도건설, 터널 붕괴 방지대책 마련

철도건설 설계 시 부실설계를 한 설계사와 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이 크게 강화된다.

철도시설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철도건설공사 부실설계 방지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철도 건설 설계 시 터널 붕락사고를 초래할 정도로 지반조사를 소홀히 한 경우, 그리고 설계도면과 설계내역서가 상이할 경우 등에 대해 관련 설계사와 기술자의 부실벌점이 강화된다. 현장 여건을 반영치 못한 설계를 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부실설계에 대한 책임을 강화시킨다는 취지로 설계사와 기술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부실벌점부과가 3회 누적될 경우 설계 참여를 배제시키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또 설계 시 각 분야별 시설기준을 반영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의 절차 및 설계단계별 과업범위의 중복방지를 위한 설계프로세스의 개선도 추진된다.

아울러 공사 착공단계 설계도서 검토 시 원설계사를 참여시켜 노하우를 전수받도록 했으며, 설계심사·설계자문위원회의 개최 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설계의 내실화를 도모해나가기로 했다. 설계 감독자 및 설계 심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 토론회 및 체크리스트 교육도 정례화시켜 운영키로 했다.

그밖에 ▲시공단계에 준하는 단계별 공정표 작성 ▲기본 설계·실시설계의 적정한 설계기간 부여 ▲검토항목 리스트(List)화 등 그동안의 설계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대책도 마련됐다.

대형마트 5개사 산재예방 협력

국내 5대 대형마트 대표들이 마트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힘을 모으는 자리가 마련됐다.

안전보건공단은 최근 서울 양재동 EL타워에서 국내 5대 대형마트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농협유통, 이랜드 리테일 등 5개사와 ‘안전한 마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마트 근로자의 재해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마트 근로자의 경우 장시간 서서 일함으로써 하지정맥류가 발생하거나,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근골격계질환 등의 직업병이 발생하기 쉽다. 또한 넘어짐, 충돌 등의 사고 위험도 매우 크게 존재하고 있다. 실제로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업종이 속한 100인 이상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사업장의 재해가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 말까지 지난해보다 30명이 증가한 123명의 재해자가 발생한 것이다.

협약 체결로 5대 대형마트는 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을 받아 협력업체를 포함하는 통합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재해예방 활동에 나서게 된다. ☺